

1. 사업개요

사업목적

-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시작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 전용 R&D 지원

지원규모(하반기) : 30억원, 40개 과제 내외

구 분		지원유형	지원규모
내역사업	세부과제		
전략형	글로벌 스타트업	자유공모	40개 내외

지원대상

- 공통자격을 충족하면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 * 글로벌 전략계획서(5페이지) 제출 후 통과한 기업에 한해 사업계획서 제출
 - ** 업력 및 매출액 기준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하며, 창업기업 범위 <참고 1> 확인

지원내용 : 글로벌(미주, 유럽, 아시아 등)*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스타트업에 현지화 기술개발 및 글로벌 사업화 프로그램 연계지원

- * 지역별 운영기관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미주(북·중남미), 아시아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미국, 유럽
- ** 선정 후 글로벌 컨설팅 등 연계프로그램 수행을 위해 최대 1.5백만원까지 사업비로 계상 가능

지원기간 및 한도 : 최대 2년 이내, 최대 3억원 이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중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 세부 지원내용

- 지원규모 : 30억원, 40개 과제 내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면서 최근년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인 창업기업으로, 글로벌 진출 계획을 보유한 스타트업

구분	창업기업 참고내용
창업기업	① 창업 및 업력 산정기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의 규정 적용하며 과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판단 <참고 1> 창업기업 여부 및 유의사항 참고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적용범위), 동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일반유희주점업, 무도유희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연구개발비

* 코로나-19에 따른 복합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2023-11호, 2023. 2. 14)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50%이상 부담 → 10% 이상 부담으로 완화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80%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에서 부담
- *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중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

(단위 : 백만원, %)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총연구개발비	개발기간
		현금	현물	합계		
1차년도 (‘23.7.1~’23.12.31)	75	2	17	19	94	6개월
2차년도 (‘24.1.1~’24.12.31)	150	4	34	38	188	12개월
3차년도 (‘25.1.1~’25.6.30)	75	2	17	19	94	6개월
합 계	300	8	68	76	376	24개월
연구개발비 대비 비율(%)	79.8	2.1	18.1	20.2	100	-

* 연구개발기간 2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지원한 경우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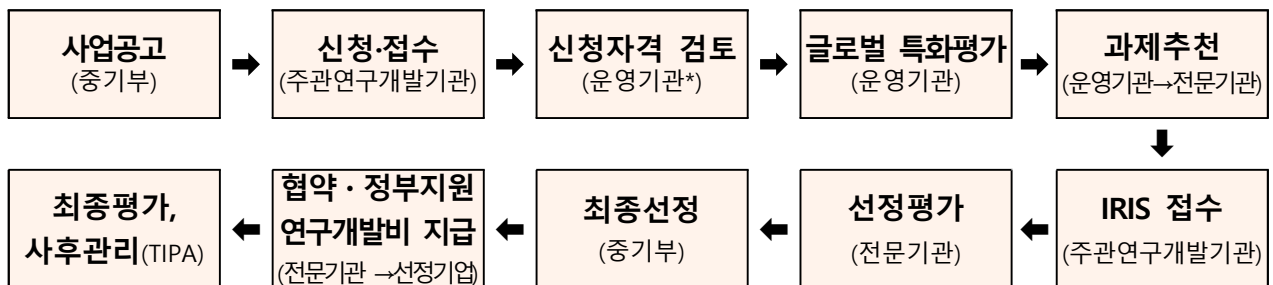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8백만원)은 전체 기관부담연구개발비(76백만원)의 10.5%임

□ 주요 연구개발비 산정기준

- (기존 인력 인건비)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창업일이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은 현금 계상 가능. 단, 참여연구자별 총 인건비 계상률은 월 100% 초과 불가
- (신규채용 인건비)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신규로 채용* 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해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 채용일부터 사업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
- (위탁연구개발비) 주관연구개발기관 직접비(현물포함)에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40% 이내에서 계상 가능
- (연구수당)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 방지를 위해 연구수당은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 연구수당 계상 한도 : 연구개발기관 수정인건비 합(현금·현물 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 인건비 포함. 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는 제외)의 20% 이내 계상 가능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은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에서 계상 가능
- (간접비)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0% 이내로 계상가능
 - * 간접비 고시 비율, 관리 사항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적용

3. 선정평가 방법 및 기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 (운영기관) 신청자격 검토(5월)

- 운영기관은 연구개발기관이 과제신청 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기본 신청자격(매출액, 창업기업 여부 등)을 검토

□ (운영기관) 글로벌 특화평가(5월)

- 운영기관은 내·외부전문가로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공통지표 항목 40점, 특화지표 항목 60점으로 평가
 -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과제 중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범위 내의 과제를 전문기관으로 추천

$$\text{평가점수} = \frac{\text{글로벌 특화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 가감점 항목은 전문기관의 선정평가 시에만 적용
- **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모든 평가절차(서면, 대면)가 완료된 후 서면평가와 대면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1회만 진행 1회 할 수 있으며, 해당 운영기관으로 신청

< 1단계 글로벌 특화 평가표 >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공통지표 (40점)	기술개발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행연구의 우수성 및 적정성 •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10
	연구개발 차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내용의 차별성 • 기술개발 목표의 차별성 	15
	연구개발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 목표의 필요성 • 기술개발 목표의 실현가능성 	15
글로벌 특화지표(60점)		• 글로벌진출 가능성	30
		• 운영기관 글로벌 특화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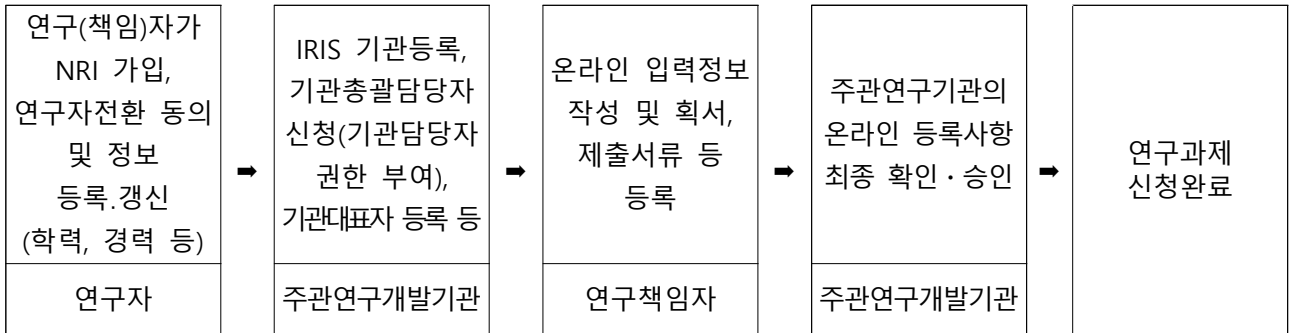
* 각 센터별 고유 특화지표 30점으로 구성

□ (운영기관→전문기관) 과제추천(5월)

- 운영기관은 글로벌 특화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의 1.5 배수로 과제를 전문기관에 추천

□ (추천기업 대상) IRIS 신청 · 접수(5월)

- 운영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연구개발기관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 시스템(IRIS)를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접수
 - * 접수기간은 운영기관(경기 · 충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한하여 별도 안내 예정이며, 접수기간 내에 미접수 시 지원제외 처리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IRIS를 통해 회원가입이 완료 되어야 하며, 반드시 본인인증 및 소속기관 등록 완료 필요
- ☞ 과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참여연구자는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필수

□ (전문기관) 신청자격 검토(5월)

-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입력한 정보 및 신청서류를 토대로 검토하며, 지원 제외사항(신청자격,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중복성 등) 등 결격사유 확인
 - *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은 시행계획 공고 [붙임] 참고

□ (전문기관) 선정평가(5월)

- 기술분야별 산 · 학 · 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을 구성하여 연구개발과제의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text{종합평점} = \frac{\text{선정평가 점수합계} - (\text{최고점수} + \text{최저점수})}{\text{평가위원 수} - 2} + \text{가점} - \text{감점}$$

*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 등 세부내용은 <참고 2> 확인

< 대면평가 시 평가표 >

평가지표	평가지표	배점
기술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개발 방향의 적정성 기술개발 접근 방법의 적정성 기술개발 결과의 기술적 활용 가능성 	40
사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화 계획의 적정성 기술개발 결과의 사업적 활용 가능성 	20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행연구개발 이력(기관 자체 R&D, 국가지원R&D) 본 과제의 선행연구개발 결과 활용, 이전 국가지원 R&D과제와의 차별성 	10
기술개발 보유 역량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개발역량 연구윤리 	25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집행계획의 적정성 	5
합 계		100

지원과제 확정(6월)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종합평점에 따라 지원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지원과제 확정
 - * 종합평점이 동일한 경우, 기술성 > 사업성 > 선행연구의 우수성과 적정성 > 기술개발보유역량수준 > 자금집행계획 > 가점이 높은 순으로 결정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7월)

- 최종 확정된 지원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전문기관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급 받아 과제를 수행

4. 신청 및 접수 방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기간

- 각 운영기관(경기창경센터, 충남창경센터) 홈페이지에서 별도 모집 공고문 확인

-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 접수 마감일 18:00시 정각 과제접수가 마감되며,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 마감일 18:00시 까지만 가능

□ 신청 및 접수방법

- 중소기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관련서류 신청·접수

* [붙임 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참조

□ 과제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 서류를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하고, 연구개발계획서 요약서 및 본문2는 온라인 시스템 직접 입력

* 온라인 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서류는 온라인에서 자동 생성되는 파일임

연번	서 식 명	제출서류	
		필수	해당시
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개발기간 시작일은 '23. 7. 1로 기재 (단, 협약 체결일정에 따라 향후 조정될 수 있음) * (본문1) 20페이지 이내 작성, 작성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본문1	○
	* (본문2) 자동생성 문서로 별도 서류작성 불필요	본문2	○
②	신용상태 조회.정보활용 동의서		○
③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④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 접수마감일 현재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및 신용조사 결과를 근거로 판단하되, 전년도 결산이 종료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를 근거로 판단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결산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재무제표확인원(회계법인, 세무법인 등의 명패와 직인 포함),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홈택스) ** 관할 세무서에 신고된 전전년도 재무제표 : 재무제표증명원(홈택스) - 단, 간편장부 대상자 등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와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되어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의 경우에 한해 확정 재무제표 발급 시(해당년도 7월 중순까지 전문기관에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까지 제출을 유예		○
⑤	아래 해당되는 서류를 하나의 파일로 제출 - (개인·법인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실증명(총사업자등록내역), - 법인등기부등본(법인기업 限) * 접수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본 * 창업기업 확인을 위해 창업기업확인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기업(주관연구개발기관)에 별도 안내		○
⑥	<참고 3> 글로벌 진출 계획서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		○

* 가점에 대한 증빙자료는 운영기관의 글로벌 특화평가 이후 전문기관에 추천된 과제에 IRIS 접수 시 제출

5. 기타사항

□ (필수) 과제 최종선정 시 정부지원금 중 운영기관 관리비 계상

- 운영기관의 역할 수행(과제관리, 컨설팅, 수행기업 점검, 센터 고유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비용을 연구개발비(현금) 중 계상*하여 집행

* 연구개발계획서 자금집행계획 중 1차년도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으로 "1,500천원" 계상

□ (보안등급) 본 공고의 경우, '일반' 과제로만 신청 가능

6. 문의처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스타트업사업실)	신청·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운영기관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경기)031-780-9071~2 (충남)041-536-7864
시스템	IRIS 운영단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를 통한 신청·접수,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등 시스템 관련 문의	IRIS 콜센터 (국번없이) 1877-2041

☞ 관련 웹사이트

- 중소기업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 <http://www.iris.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llfqd

참고 1

창업기업 범위

□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를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1. 일반유흥주점업(56211)
 2. 무도유흥주점업(56212)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91249)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 ()의 업종 분류 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 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다만,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법인인 중소기업은 제외한다)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이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5호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해당 법인과 그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조직변경 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만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은 추가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의 매출액 또는 총 매출액을 말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 :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세분류 - 세세분류 순
예시)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C33999)

① 대분류(C), ② 중분류(C33), ③ 소분류(C339), ④ 세분류(C3399), ⑤ 세세분류(C33999)

* 주업종 코드 확인

· 국세청 주업종 코드 조회하기 : [홈택스] - [홈택스에 등록된 공인인증서 로그인] - [My NTS] - [사업자 등록사항 및 담당자 안내] - [상세보기]

·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하기 :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 검색을 통해 주업종을 판단

참고 2

창업여부 기준표

신청기업구분	상세 구분		창업여부	
개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타인으로부터 상속/증여	기존 사업과 동종의 사업 개시 이종	창업아님 창 업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	창업아님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기존 법인사업자 유지 또는 폐업	-	창 업		
법인기업	창업(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이내		창업 기본요건	
	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폐업 3년 초과	창 업
			폐업 3년 까지	창업아님
			부도/파산 - 2년 초과	창 업
		부도/파산 - 2년 까지	창업아님	
		동종전환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개인사업자의 창업자 지위승계
	기존 개인사업자 유지	이종창업	-	창 업
		동종창업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또는 최대주주	창업아님
			단독 또는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하이면서 최대주주 이님	창 업
자회사 여부	법인주주(임원 포함)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과점주주 여부	다른 법인의 과점주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 초과 소유		창업아님	
회사형태 변경	동종유지		창업아님	
	이종		창 업	

※ 포괄양수도 계약에 의한 법인전환 :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인 창업기업(창업여부 기준표에 따라 창업여부 판단)이고, 양도·양수기업 간 대표자 동일, 동종 업종, 양도기업(기존 개인사업자) 폐업 완료, 양도기업의 권리·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함

※ 동종의 범위 :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를 기준으로 세세분류(코드번호 5자리)가 모두 일치하면 "동종"

※ 과점주주 :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

※ 창업지원법 시행령 부칙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 ①2020.10.8.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시행령 제31108호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 "개인사업자 설립일이 '20.10.8. 이전이면서, 다른 장소에서 이업종의 개인사업자를 설립"한 경우 "창업"으로 판단

②영 시행(2022.6.29.)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영 제2조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는 창업자로 인정

참고 3

가감점 항목 및 확인방법(증빙서류)

□ 가 · 감점

- (가점) 전문기관의 장은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우대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최대 5점까지 부여할 수 있고, 성과창출 강화 항목은 이를 초과하여 별도 적용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분야	우대사항	가점	확인방법 (증빙서류)
성과창출 강화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기업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기업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1점	최종평가확인서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기업	1점	표창장 등
	최근 3년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	1점	표창장 등
생태계 보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여성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여성기업확인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장애인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1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의 각 목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장애인등록증 확인 필)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소재 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 위기업종 관련 기업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지역 산업위기 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	1점	기술개발 수행 사업장 주소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감점)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감점 부여

연번	감점 사항	감점	확인
①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1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10점	전문기관 확인
②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 1. 특별평가를 통해 과제 포기사유를 인정받은 경우, 2. 과제에 지원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전액을 반납하고 포기한 경우	1점	

글로벌 진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명]

I. 기업 현황 (1 Page이내 작성)

1. 수출희망지역

수출희망지역	운영기관	주요 진출내용(현지법인설립, 특허출원, 수출 등)

* 미주, 아시아 진출 희망 하는 기업은 운영기관을 경기창조경기센터로 신청

* 미국, 유럽지역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은 운영기관을 충남창조경기센터로 신청

2. 경영실적 지표

(단위: 천원, US\$)

구분	2022년	2023년 예상	2024년 예상
매출액			
수출액			
영업이익			

3. 수출 실적

년도	주요 수출품목	주요 수출국가명	수출방식 (직매입/위탁)	수출액(단위 : 천불)
2020년				
2021년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 중소기업과 체결한 매매계약서, 수출대행계약서, 계약이행증빙자료 등 별도붙임 제출

4. 거래처 현황

구분	거래금액(천원)	거래품목명	기업명	거래비중(%)
2020				
2021				

II. 해외시장 진출 전략 계획

1. 해외 시장 진출 목표

(단위 : 천원, %)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A)						
개발기술의 수출 성과	예상 제품 수출액(B)						
	매출액 대비 수출 점유비율 (C) ($C=(B/A)*100$)						

2. 수출 목표 산정 근거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산정근거	참고자료명
매출액 등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		
개발기술의 수출 성과	예상 제품 수출액		

3. 예상 수출 품목

수출 품목명	품목용도	품질 및 가격경쟁력	수출여부	판매채널 (온·오프라인)

4. 세부 계획

* 사업목표, 세부내용, 성과창출방안 등 자유롭게 서술

'필수적' 성과목표

< '필수적 성과목표' >		
사업 필수성과 지표[수정불가]	본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제안하는 최종 성과목표 성과(% , 건)	평가항목 점수 비중(%) [수정불가]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5%이상 달성	수출액 비중 00%이상 달성	20%
해외 특허 출원·등록 2건 이상	출원0건, 등록0건	10%
해외 2개국 이상 수출 실적 달성	수출 0개국	10%
해외 현지법인 설립	0건(나라명)	10%
< [참고] 사업 정량성과 인정기준 >		
사업 필수성과 지표[수정불가]	인정사항	
매출액 대비 수출액 비중 25%이상 달성	- 기술개발 종료이내 기준(설립 3년 이내) 매출액 대비 수출비중 증빙 * 결산 재무제표 한국무역협회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원장 ** 예시) 직전년도 기준(설립 3년 이내) 결산 재무제표와 동일 직전년도 수출실적증빙 등 비중 증빙	
해외 특허 출원·등록 2건 이상	- 국외 특허 또는 PCT 출원서·등록서 인정 - 기술개발 기간 내 달성한 경우 인정(기술개발과 관련 없는 내용 및 기술개발과 상관없는 공동 출원인 인정 불가)	
해외 2개국 이상 수출 실적 달성	- 한국무역협회 등에서 발급한 수출실적증명서, 수출원장 - 기술개발 기간 내 달성한 경우만 인정	
해외 현지법인 설립	- 법인등본 등 주주명부가 포함된 주관기관과 관련성을 인증 - 기술개발 기간 내 달성한 경우만 인정	

* 사업 필수성과의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성과만 인정

- 해외 거래처 MOU 등 정성적 목표, 추가적 목표 등 자유롭게 작성

사업추진체계

매칭기업(바이어) 발굴계획

세부추진계획

- 상품페이지 제작· 리스팅, 물류, 배송, CS, 수수료, 마케팅·홍보 등

성과창출방안

해외 특허·인증 획득 전략

III. 후속 일정 및 기타

1. 연간 해외진출·마케팅 일정

* 국가별 시즌별 주요 글로벌플랫폼 행사(예-중국 광군제 11월, 화장품 가격할인전) 활용 마케팅 뿐 아니라 새로운 마케팅 방안 등 제시

2. 기타 수출 성공 또는 대표사례

수출 성공 또는 대표사례	
---------------	--

* 별도 첨부 가능

3. 기타

--